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20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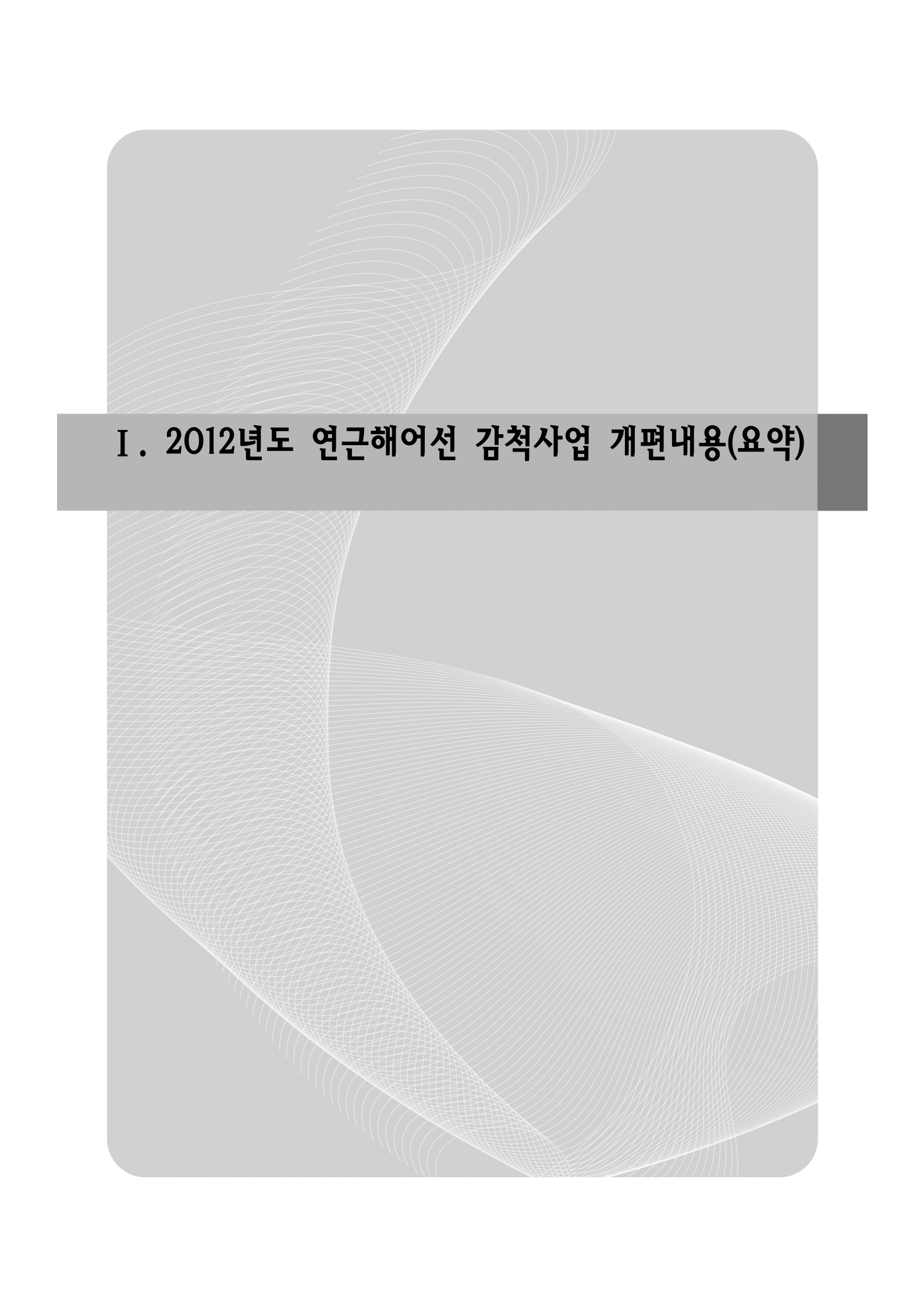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 | |
|---|-----|
| I.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내용 (요약) | 1 |
| II. 2012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 5 |
| 1. 목 적 | 7 |
| 2. 추진방향 | 7 |
|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 7 |
| 4. 사업계획 | 8 |
| 5. 신청자격 및 조건 | 11 |
|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 13 |
|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16 |
|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17 |
|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 17 |
|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18 |
| 11. 감척 어선·어구 등 처리 | 19 |
|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22 |
|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24 |
| ※ 불 임 | 25 |
| ※ 서 식 | 43 |
| ※ 참고자료 | 51 |
| III. 201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 65 |
| 1. 목 적 | 67 |
| 2. 추진방향 | 67 |
| 3. 사업대상 및 절차 | 67 |
| 4. 사업계획 | 68 |
| 5. 신청자격 및 조건 | 70 |
|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 72 |
|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75 |
|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76 |
|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 | 76 |
|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77 |
| 11. 폐업어선 처리 | 77 |
|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79 |
|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80 |
| ※ 불 임 | 83 |
| ※ 서 식 | 97 |
| ※ 참고자료 | 105 |
| IV. 자원관리형 및 폐업지원형 감척 단계별 도상연습(안) | 121 |
| 1.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법 제4조) | 123 |
| 2.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 123 |
| 3. 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법 제6조) | 124 |
| 4. 감척대상 업종의 지정(법 제8조~제10조) | 124 |
| 5. 감척 대상어선(대상자)의 선정(법 제11조) | 125 |



I .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편내용(요약)

I.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내용 (요약)

| ' 11년도 집행지침 | ' 12년도 개정안 | 변경사유 |
|---|--|---|
| <p>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말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의 경우에는 감척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의 경우에는 감척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도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계획에 따라 허가정수가 조정될 경우, 감척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 <p>5. 신청자격 및 조건 〈신 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척신청 요건인 조업실적 확인은 출입항신고 확인과 더불어 면세유 구매실적 및 수협 위판 실적(필요시)도 확인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척신청 요건 확인 절차 강화 |
| <p>5. 신청자격 및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신청을 한자는 5년간 감척사업 참여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0년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참여를 강력 배제하기 위함 |
| <p>6. 입찰추진 절차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 <p>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포기시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포기시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향후 3년간 감척사업 참여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감척사업 추진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 <p>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신 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에 시·군·구별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2013년도에 감척사업비를 배정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 ' 11년도 집행지침 | ' 12년도 개정안 | 변경사유 |
|--|---|---|
| <p>연안어선 (붙임 2)</p> <p>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p> <p>○ 정수를 기준으로 톤급 구분</p> | <p>○ 소숫점이하 두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숫점이하 첫째자리를 기준으로 톤급 구분</p> | <p>○ 기초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톤급을 0.01톤 상향조정하는 사례 방지</p> |
| <p>IV. 자원관리형 및 폐업지원형 감척 단계별 도상연습(안)</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 <p>○ <u>2013년도에 시행예정인 정 부주도형 감척 추진 단계 별 도상 연습안을 신설함</u></p> | <p>○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감척사업 추진을 위함</p> |



Ⅱ. 2012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Ⅱ. 2012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탄소배출(연료소모)이 많은 업종, 불법어업 가능 업종(국제적인 IUU 근절) 우선감척 등을 통해 선진어업으로 구조개편

2. 추진방향

- WTO/DDA,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2012년까지 어업인 희망위주의 감척사업 추진
- 조업분쟁 및 자원 남획형 어업, 외국의 EEZ내 입어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어려워진 어업, 유류소모량이 많은 업종 등을 위주로 감척

3.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가. 사업대상

- 1) 근해어선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 중형저인망(동해구외끌이, 서남구외끌이, 서남구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어업으로 한다. 다만,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은 제외한다.
- 2) 어획물운반선 :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4.14.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을 「수산업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은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우선순위

2012년도 사업 대상어업의 우선 순위는 허가처분건수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허가정수보다 높은 비율의 업종 순으로 한다.

- 예시** A업종의 허가처분건수 50건, 허가정수 30건, B업종의 허가처분건수 50건, 허가정수 40건 일 경우
- A업종 초과율 = $50/30 \times 100 = 167\%$
 - B업종 초과율 = $50/40 \times 100 = 125\%$
- ⇒ 따라서 A업종을 우선 감척하여야 함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1) 사업비 및 물량 : 10,320백만원(국비 100%), 30척(통)

※ 사업물량은 업종별 입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내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초금액 대비 응찰율이 가장 낮은 어업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척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결정(이하 “잠정사업자”라 함)하여 통보한다. 응찰율이 동일한 경우 3-나 사업 대상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잠정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응찰율과 대상어업이 동일한 경우에는 톤수의 크기, 선령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잠정 사업자를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통보한다.

다)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2012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입찰공고

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 1) 사업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사업 집행주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체계

- 1)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한다.
 - 가) 사업 안내 등 홍보
 - 나)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 다) 입찰집행
 -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 바)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 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3)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접수, 감척어선 관리 및 폐선처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및 조건

-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해체 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2)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구간별로 조사된 금액을 입찰제를 통하여 최대 80%까지(붙임 1) 지원하고,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한다.

3) 선단조업 어선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한다.(조업실적이 5.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폐업지원금(50% 정액) : 불입 1 기초가격의 5/8

4) 어획물운반선,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5)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시행 기준일 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쌍끌이 기준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한다.

예시 A : 선단조업기간(월),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 C : 폐업지원금(50% 정액)
수령액=A(36-B)/36개월 × C+B(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36개월 × C×50%

6)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 3), 4), 5), 6) 해당어선의 감척은 입찰이 아닌 별도의 절차에 의거 추진하며,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물량은 '12년 사업집행지침에 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다.

7)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100%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하다.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어획물운반선 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실적이 있는 자.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 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관할 어촌계단위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확인 후 신청토록 할 수 있다.

(가)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산출된 조업실적)

(다) 수협 위판 실적 :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사업집행주체가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어획물운반선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운반선의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

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가. 입찰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공고 이전에 “세부사업 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등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대상 허가어업자,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어업인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

(1)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의하되 사업집행주체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자(12.2.16)에 공개하고,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문서로 발송하여 가능한 많은 어업인들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입찰에 붙이는 사항

- (나) 입찰방법(입찰신청서류 제출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제출)
 - (다)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라) 입찰 일시 및 장소
 - (마) 계약체결 방법
 - (바) 입찰참가 자격
 - (사) 입찰참가 신청서류
 - (아)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구간별 기초가격(붙임 1)
 - (자)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3) 입찰공고문은 표준입찰공고문(참고자료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 신청

- (1) 입찰참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대상 물량(척수)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하여야 입찰이 성립된다.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인감증명서 1부
 - (라) 입찰서 1부(밀봉 날인)
 - (마)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라. 입찰등록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등록서(서식 5)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 (2) 입찰등록은 등록 마감일 일과시간(18:00) 이내로 하며, 입찰 신청시 제출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3) 입찰등록과 동시에 입찰서를 밀봉 날인하여 사업시행주체(시·도)의 입찰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입찰집행

- (1)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12. 3. 14. 14:00 전국 시·도 동시에 입찰함의 입찰서를 개봉함으로써 입찰을 집행한다.
※ 각 시·도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1~2일 변경 가능
- (2) 입찰시 수협관계자, 어업인, 공무원 등 최소 3인 이상은 배석하여 입찰 집행 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 (3) 입찰참가 신청한 어업인은 누구나 입찰 장소에 입장하여 참관할 수 있다.
- (4)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과 업종별 등급·구간별 기초가격과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고, 전체예산을 고려하여 입찰대상 척수의 1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한다.
- (5) 입찰결과 참가어업인의 요구시 본인의 응찰금액 및 응찰율, 시·도내 우선순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6)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이다.
- (7) 시·도별 입찰집행관은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붙임 4)서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수신식품부 장관은 전국자료를 취합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입찰 참가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4)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2012년도 사업예산의 잠정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 (8)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입찰에도 사업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차 투찰가격보다 2차 투찰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입찰결과 안내

- (1)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집행절차, 예산의 지원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인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응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한다.

사. 기타

- (1)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붙임 2)에 의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가. 감정평가

-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당해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5(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와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붙임3)에 의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가) 사업자의 확정 및 지원금 집행 결정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재 조치

가. 계약체결

- 1)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자와 표준계약서(서식 4)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 3) 2)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 이행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가 지원금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결정 내용과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의 허가가 폐지되고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허가도 폐지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사업비 중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물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치

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가.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1. 감척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 1) 계약 상대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서의 목록과 대비 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협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당해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어업 외 용도로 매각

-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1) 폐업어선 중 선령 10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 2)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4) 사업집행주체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함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 5) 사업집행주체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함.
-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당해어선을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7) 사업집행주체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사업집행주체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 1) 기관,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 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할 수 있다.
 -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사업 집행주체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 가) 해체 처리 시에는 사전에 사업 집행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11-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대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다.
-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바. 매각대금의 처분

-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국고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국고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가.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어선·어구 및 어업허가증을 인도(반납)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체 증명서가 제출되어 어선등록을 말소한 후 지급하거나, 사업추진상 필요시 시·도지사가 따

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 + 잔존가치 평가액)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잠정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 2) 잠정 사업자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사업비의 집행은 계약상대자가 시·도에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마.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바. 폐업지원금의 환수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2)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수수료, 폐선처리 비용도 부담시켜야 한다.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군·구별 근해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근해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연락처 별첨)

- 1)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
- 2) 시도 및 시·군·구 : 수산담당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 절차 : 참고자료 1~2 참조



인

인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 단위별 기초가격

근해어어선 감척사업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공고시 해당업종의 기초가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 어업 종류별 | 톤급단위(본선기준) | 기초금액 | 비 고 |
|----------------------|---------------|-----------|--|
|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 구분 없음 | 277,589 | |
|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 100톤 미만 | 325,571 | * 2척 기준금액 |
| | 100톤~130톤 미만 | 540,822 | |
| | 130톤 이상 | 632,598 | |
|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 | 구분 없음 | 304,511 | |
|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 구분 없음 | 430,511 | |
|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 50톤 미만 | 422,128 | * 2척 기준금액 |
| | 50톤 이상 | 654,022 | |
| 근해트롤(대형트롤) | 구분 없음 | 546,483 | |
| 근해트롤(동해구트롤) | 40톤 미만 | 258,736 | |
| | 40톤 이상 | 564,398 | |
| 근해선망(대형선망) | 100톤 미만 | 1,041,118 | * 선단 기준금액 (본선1, 등선2, 운반선3척) |
| | 100톤~120톤 미만 | 1,509,576 | |
| | 120톤 이상 | 1,936,667 | |
| 근해선망(소형선망) | 구분 없음 | 163,799 | * 선단 기준금액 |
| 근해채낚기 | 35톤 미만 | 147,137 | |
| | 35톤~65톤 미만 | 171,920 | |
| | 65톤 이상 | 208,421 | |
|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 200톤 미만(선단기준) | 375,567 | * 선단 기준금액 (본선2, 어탐선1, 가공 및 운반선2척) |
| | 200톤 이상(선단기준) | 489,842 | |
| 근해자망 | 35톤 미만 | 126,352 | |
| | 35톤~65톤 미만 | 187,260 | |

| 어업 종류별 | | 톤급단위(본선기준) | 기초금액 | 비 고 |
|------------|----|------------|---------|-----|
| | | 65톤 이상 | 234,534 | |
| 근해안강망 | | 35톤 미만 | 142,950 | |
| | | 35톤~65톤 미만 | 185,120 | |
| | | 65톤 이상 | 233,773 | |
| 잠수기 | 1구 | 구분 없음 | 196,118 | |
| | 2구 | 구분 없음 | 118,903 | |
| | 3구 | 구분 없음 | 155,651 | |
| | 4구 | 구분 없음 | 117,722 | |
| | 5구 | 구분 없음 | 181,530 | |
| 근해통발(장어통발) | | 35톤 미만 | 167,937 | |
| | | 35톤~65톤 미만 | 218,270 | |
| | | 65톤 이상 | 284,268 | |
| 근해통발(기타통발) | | 35톤 미만 | 158,254 | |
| | | 35톤~65톤 미만 | 216,698 | |
| | | 65톤 이상 | 286,734 | |
| 근해통발(문어단지) | | 구분 없음 | 144,883 | |
| 근해형망(패류형망) | | 구분 없음 | 146,776 | |
| 근해연승 | | 20톤 미만 | 143,894 | |
| | | 20톤~35톤 미만 | 164,970 | |
| | | 35톤 이상 | 194,643 | |
| 자리돔들망 | | 35톤 미만 | 69,572 | |
| | | 35톤~65톤 미만 | 80,393 | |
| | | 65톤 이상 | 97,700 | |
| 봉수망 | | 35톤 미만 | 69,572 | |
| | | 35톤~65톤 미만 | 80,393 | |
| | | 65톤 이상 | 97,700 | |

(붙임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인감증명서 1부
 - 라. 입찰서 1부.
 - 마. 기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부받을 수 있다
 - 가. 입찰공고문
 -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 다.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1)
 - 라.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서식 4)
 - 마.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시·도지사(시장·군수)가 제시하는 경우]
 - 바. 기타 참고자료
5. (관계법령 등의 숙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 (입찰) ①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은 입찰서(서식 3)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8. (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9. (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은 사업집행주체가 입찰공고한 대상 입찰대상 척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잠정사업자의 선정) ①시·도별 입찰집행관은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붙임 4 서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폐업지원금을 가장 낮게 제시한 어업인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잠정사업자로 선정 시·도에 통보한다.

12. (재공고 입찰) ①입찰결과 유효한 사업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재공고 입찰에도 사업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차 투찰가격보다 2차 투찰가격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3. (사업대상자의 결정) ①사업대상자는 업종별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③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 포기자 또는 계약 미이행자가 발생하면 예비후보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업대상자의 응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 비율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어업허가 처분건수가 허가정수보다 많은 어선, 외국수역 조업허가 유무, 선령이 오래된 어선, 어선의 규모가 큰 어선 순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14. (입찰결과 통지) ①입찰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잠정사업자로 선정 시·도에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인의 입찰금액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 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평가방법 및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2012년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붙임 3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산출한다.
 ④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⑤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가)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시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한다.

(나) 사업자 선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업자 선정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6.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①입찰결과와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7. (계약의 체결) ①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서식 4)와 구비서류를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집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9.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 이행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21.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업집행주체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3)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1.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1) 선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통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 질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
| 강 선 | 25 | 20 |
| FRP | 20 | 10 |
| 목 | 15 | 10 |

2) 기관

-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
| 기 관 | 20 | 10 |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율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
| 의장품 | 15 | 10 |

※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08.8.1.)에 따른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조정을 위해 제거한 집어등은 잔존가치에 포함함

4) 어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

할 경우 감가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업종 | 어구명 | 규격 | 표준수량 | 단위 |
|------------------|--------|---------------|--------|----|
| 대형기저(외끌이) | 저인망 | Warp, 어망 | 2 | 틀 |
| 대형기저(쌍끌이) | 저인망 | Warp, 어망 | 2 | 틀 |
| 중형기저(동해구기저) | 저인망 | Warp, 어망 | 2 | 틀 |
|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 저인망 | Warp, 어망 | 2 | 틀 |
|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 저인망 | Warp, 어망 | 2 | 틀 |
| 근해트롤(대형트롤) | 트롤 | Warp, 어망, 전개판 | 2 | 틀 |
| 근해트롤(동해구트롤) | 저층트롤어구 | Warp, 어망, 전개판 | 2 | 틀 |
| 근해선망(대형선망) | 선망 | Warp, 어망 | 1 | 틀 |
| 근해선망(소형선망) | 선망 | Warp, 어망 | 2 | 틀 |
| 근해채낚기 | 자동조상기 | - | - | - |
|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 권현망 | Warp, 어망 | 2 | 통 |
| | 건조기 | 1,050발 기준 | 2 | 대 |
| | 선별기 | | 2 | 대 |
| 근해자망 | 자망 | 8톤~20톤 미만 | 15,000 | 미터 |
| | | 20톤~40톤 미만 | 18,000 | 미터 |
| | | 40톤 이상 | 21,000 | 미터 |
| 근해안강망 | 잡어용 | 어장닷 1개씩 포함 | 5 | 틀 |
| 잠수기 | 잠수어구 | - | 2 | 식 |
| 근해통발 | 장어통발 | 8톤~20톤 | 3,200 | 개 |
| | | 20톤~40톤 | 5,000 | 개 |
| | | 40톤 이상 | 7,000 | 개 |

| 업종 | 어구명 | 규격 | 표준수량 | 단위 |
|-------|----------------|----------|--------|----|
| | 기타통발 (홍게·게) | 8톤~20톤 | 2,500 | 개 |
| | | 20톤~40톤 | 3,500 | 개 |
| | | 40톤 이상 | 5,000 | 개 |
| | 문어단지 | 8톤 이상 | 24,000 | 개 |
| 근해형망 | 형망 | Warp, 어망 | 4 | 통 |
| 근해연승 | 주낙 | - | 1,000 | 바퀴 |
| 붕수망 | 붕수망 | Warp, 어망 | 2 | 틀 |
| 자리돔들망 | 들망 | Warp, 어망 | 2 | 틀 |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실적이 인정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

- 근해안강망 중 충남·경기·인천해역 : 10틀
 - 근해통발(기타통발) 중 강원·경북해역 : 20톤 미만 4,000개, 20톤~40톤 5,500개, 40톤 이상 7,000개
 - 근해자망 중 강원·경북해역 : 20톤 미만 38,000미터, 20톤~40톤 미만 49,000미터, 40톤 이상 75,000미터
- ※ 기선권현망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포함, 단 선단 전체가격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선주 소유분에 한함)

(붙임 4)

'12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결과 보고서

(:)

| 사도 | 순위 | 신청업종 | 선 명 | 소유자 | 외국수역 조업허가 | 선령 | 보유허가 | 톤수 | 소유 년월 | 출어 일수 | 선질 | 기초가격 (a) | 입찰금액 (b) | 입찰율 (b/a*100) |
|-----|----|--------|------|-----|--------------|----|-------|-----|----------|----------|----|-------------|-------------|------------------|
| 예시) | | (근해저망) | | | 유·무기록 | | | 신통수 | | | | | | |
| 경남 | | (근해통발) | 57만선 | 홍길동 | 유 | 10 | 자망,연승 | 15 | 95.02 | 80 | 강 | | | |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 사도 | 순위 | 신청업종 | 선 명 | 소유자 | 외국수역 조업허가 | 선령 | 보유허가 | 톤수 | 소유 년월 | 출어 일수 | 선질 | 비고 |
|-----|----|------|------|-----|--------------|----|-------|-----|----------|----------|----|-------|
| 예시) | | 근해저망 | | | 유·무기록 | | | 신통수 | | | | 무조업선 |
| 경남 | | 대형선망 | 57만선 | 홍길동 | 유 | 10 | 자망,연승 | 15 | 95.02 | 80 | 강 | 본선 침몰 |

* 어획물운반선 감척 신청자 내역

| 사도 | 우선 순위 | 선 명 | 소유자 | 99.4.14 이전허가일 | 등록일 | 자가 운반선 | 선령 | 톤수 | 총항 일수 | 소유 년월 | 선질 |
|-----|----------|------|-----|------------------|-----|-----------|----|----|----------|----------|----|
| 예시) | | | | 허가일기재 | | 여·부기재 | | | | | |
| 경남 | 1 | 57만선 | 홍길동 | 99. 4. 10 | | 여 | 15 | | 80 | 95.02 | 강 |

〈작성방법〉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뛰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 Point 이내, 뛰어 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 “제57만선호”는 잘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 (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
(예시: 자망,연승,기동)
- 톤수 : 신통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 (15.83톤 → 15)
* 구톤수는 신통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통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 (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 법 령 상 | |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 |
|-----------|--------------|-------------|-----------|
| 종 류 | 명 칭 | 신청업종 | 보유허가 (약칭) |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대형기저 | 외끌이 |
|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쌍끌이 |
|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동해구저인망어업 | 중형기저 | 동기저 |
| | 외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 | 외서기저 |
| | 쌍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 | 쌍서기저 |
| 근해트롤어업 | 대형트롤어업 | 근해트롤 | 대트 |
| | 동해구트롤어업 | | 동트 |
| 근해선망어업 | 대형선망어업 | 근해선망 | 대형선망 |
| | 소형선망어업 | | 소형선망 |
| 근해채낚기어업 | 근해채낚기어업 | 근해채낚기 | 채낚 |
| 기선선인망어업 | 기선권현망어업 | 기선권현망 | 권현 |
| 근해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근해자망 | 자망 |

| 법령상 | |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 |
|---------|-----------|-------------|-----------|
| 종 류 | 명 칭 | 신청업종 | 보유허가 (약칭) |
| 근해안강망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 근해안강망 | 안강 |
| 근해봉수망어업 | 근해봉수망어업 | 근해봉수망 | 봉수 |
|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 자리돔 |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 | 잠수기 |
| 근해통발어업 | 장어통발어업 | 근해통발 | 장통 |
| | 기타통발어업 | | 기통 |
| | 문어단지어업 | | 문단 |
| 근해형망어업 | 패류형망어업 | 근해형망 | 패형 |
| 근해연승어업 | 근해연승어업 | 근해연승 | 연승 |
| 어획물운반선 | 어획물운반선 | 운반선 | 운반 |

(붙임 5)

어선원 실태조사서

- 조사연도 : 2012(○)
- 조사방법 : 전화(), 면담(), 어업인 직접작성()
- 사업분야 : 연안어선(), 근해어선(○)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뒷자리 생략 |
| 주소 | | | |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 | | | | |
|------|------|-----------|-------------------|----|
| 허가번호 | | 허가기간 | . . . ~ . . . () | |
| 어선명 | 어선번호 | 어업의 명칭.종류 | | |
| 건조일자 | | 톤수 |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 |
| 선체재질 | | 기관종류 | 육상디젤(), 디젤() | 마력 |

* “가”, “나”의 내용은 '10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의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내용을 기재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현황

| 출항 (조업) 일수 | 승선 인원 | 고용보험 가입현황 | | | 선원법상 실업수당 지급현황 | | |
|------------------|--|-----------|-----------|---|----------------|-----------|---|
| | | 가입 인원 | 미가입 인원 | 미가입 사유 | 지급 인원 | 미지급 인원 | 미지급 사유 |
| *연간조업 일수 | * 조업 전 까지 승선 인원 또는 평 균 승선 인원 | | | ①외국 어선원()명 ②65세이상 ()명 ③상시 4명이하 고용 ④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명 ⑤여력부족 ⑥기타 | | | ①계약기간만료 ②20톤미만 선박 ③선원근로조건위반, 하 선 등 ④선원노동위원회인정 ⑤여력부족 ⑥기타 |

*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서 식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즉 시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어선내역 | 선명 | | 업종 | |
| | 신통수 | | 건조일자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시/장소 | |
| | 입찰건명 | | | |
| 대사 리용 인인 ·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 |
| <p>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사도)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p> <p>붙임서류 : 1. 어업허가증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입찰서 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p> <p style="text-align: right;">2012.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귀하</p> | | | | |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 | | | | |
|------|------|------|-----------------------|----|
| 허가번호 | | 허가기간 | ~ () | |
| 어선명 | 어선번호 | | 어업의 명칭.종류 | |
| 건조일자 | | 톤 수 |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 |
| 선체재질 | | 기관종류 | 육상디젤(), 디젤() | 마력 |

상기 본인은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어업허가 폐지에 동의할 것을 확인함

2012. . . .

위원인 주소

성명

(인)

(서식 3)

| | | | | |
|--|------|--|--|-------------|
| | | | | 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 . . .</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감도장)</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 | | | |

(서식 4)

|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 | 계약번호 제 호 |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 약 자 | 발 주 처 | |
| | 계 약 상 대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
| 계 약 내 용 | 어 선 명 | 어업의 종류(톤수) |
|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폐업지원금 :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 |
| | 지 체 상 금 율 | 0.15% |
| | 어업허가증 반납일자 | 2012. . . 까지 |
| | 어선 반납일자/장소 | 2012. . . 까지/ |
| | 제재사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 <p>시·도의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어선감척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입서류 : 1. 어선감척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부. (생략) 3. 어선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2. . .</p> <p style="text-align: right;">해당 시·도 계약담당관 (인)</p> <p style="text-align: right;">계약상대자 (인)</p> | |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안)

| 구 분 | 일 정 | 집행주체 |
|-----------------------------|----------------|---------------|
| ○ 사업 집행지침 시달 | 1월중 | 농림수산식품부 |
| ○ 사업(입찰) 안내 | 1. 25 ~ 2. 5 | 시·도 수협·어촌계 |
| ○ 입찰공고 | 2. 16 ~ 3. 5 | 시·도 |
| ○ 입찰등록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3. 6 ~ 3. 13 | 시·도 |
| ○ 입찰실시 | 3. 14 | 시·도 |
| ○ 입찰결과 목록작성 및 농식품부 제출 | 3. 21 | 시·도 |
| ○ 잠정사업자 선정 통보 | 3. 26 ~ 3. 30 | 농림수산식품부 |
| ○ 어선·어구 감정평가 실시 | 4. 9 ~ 5. 8 | 시·도 |
|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 4. 9 ~ 5. 8 | 시·도 |
|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 4. 9 ~ 5. 8 | 시·도 |
| ○ 지원금 지급 | 5. 8 ~ 6. 7 | 시·도 |
|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12. 1 ~ 12. 31 | 시·도 |

※ 예시임

(참고자료 2)

감척사업 추진 절차

| 추진순서 | 수행 기관 | 소요 기간 | 내 용 |
|------------------------|----------|-------|--|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수산 식품부 | 즉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여 사·도에 시달 |
|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시·도 | 7일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 집행지침 수립 ○ 입찰 신청자격, 제출서류,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
| 사업안내·홍보 입찰공고 | 시·도 | 30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에 입찰 안내문 발송 ○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장소, 입찰 방법, 잠정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
|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시·군 시·도 | 7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참가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 신청서류 접수 ○ 입찰 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 입찰 참가신청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 제출(입찰함에 보관) |
| 입찰 | 시·도 | 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집행관이 정해진 입찰장소에서 개봉(전국 동시 3.17. 14:00 입찰) - 수협관계자, 어업인, 공무원 등 최소 3인이상은 배석 참관 ※ 입찰등록 어업인은 누구나 참관가능, 시·도의 사정에 따라 입찰일 시 1~2일 변경 가능 ○ 입찰결과 목록작성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잠정사업자 선정 | 농림수산 식품부 | 5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 사업대상자 결정 -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유찰시 재공고 입찰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 ○ 입찰결과 시·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 |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 시·도 | 6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 2개의 감정평가법인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시·도 | 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
|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 시·도 시·군 | 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
| 지원금지급 | 시·도 시·군 | 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지원금 입찰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
| 사업 정산 | 시·도 | 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 후 반납 |

※ 예시임

(참고자료 3)

표준입찰공고문

○○시·도 공고 제2012 - 호

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근해어선 일반감척 업종별 구분 없이 10척

※ 사업물량은 업종별 입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대상 업종

가. 근해어선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 중형저인망(동해구외끌이, 서남구외끌이, 서남구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어업으로 한다. '10년말 기준으로 허가처분건가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근해붕수망, 근해문어단지, 근해자리돔들망,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제외한다.

나. 어획물운반선 :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4.14.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을 「수산업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은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2. 00. 00. 18:00/ 각 시도 수산담당과

※ 입찰참가서류 제출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 제출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12. 00. 00. 14:00 / 각 시도 지정하는 장소

※ 입찰참가어업은 누구나 입찰 집행장에 배석하여 참관 가능

6.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고,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8. 입찰 참가자격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하다.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어획물운반선 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실적이 있는 자.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관할 어촌계단위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확인 후 신청토록 할 수 있다.

(가)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산출된 조업실적)

(다) 수협 위판 실적 :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사업집행주체가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어획물운반선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운반선의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만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라)호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②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낙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8-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선령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9.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10. 입찰참가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입찰서 1부.

마.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11.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 어업 종류별 | 톤급단위(본선기준) | 기초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개별 평가합니다.

12. 기타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감척사업 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과(전화번호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0. 00.

○○ 시·도 입찰집행관

(참고자료 4)

입찰서(예시)

| 입찰서 | | | | |
|---|------|---|--------|----------------|
| 입찰내용 | 광고번호 | 제2012 - ○○호 | 입찰일자 | 2012. . . |
| | 건명 |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입찰 (근해어업 ○○업종, ○척, ○톤) | | |
| | 금액 | 금일천사백오십이만오천원정 (₩ 14,525,000) | | |
| 입찰자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123456-9101112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011-123-4567 |
| 선박재원 | 선명 | ○ ○ ○ | 어업의 종류 | 근해자망어업 |
| | 신통수 | 톤 | 건조일자 | 1999. 9. 9 |
| <p>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를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2.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입찰자 아무개 (인감도장 날인)</p> <p style="margin-top: 50px;">○○도지사(시장) 귀하</p> | | | | |

※ 본 입찰서 예시를 입찰장에 미리 부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5)

홍보물 내용

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 참가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잔존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업대상

감척대상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입찰 안내문과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방법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에 대하여 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을 합하여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 가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5. 사업참가자격

○ 신청자격

- 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최근 2년 이내에 90일 이상 조업(어획물 운반)실적이 있는 자(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과 어획물 판매실적 및 어업용 유류 구매실적으로 확인)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등 2012년도 사업 집행지침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는 자(국제감척 및 소형기저 정리사업 포함)
 -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대상이 되는 자
 - 최근 10년 이내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을 한 어업자
-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 입찰방법

- 입찰안내

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금년도 감척대상 업종, 예산,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도 보내드리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입찰에 붙이는 사항
 - 입찰방법(입찰참가 신청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제출)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일시 및 장소
 - 계약체결 방법
 -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 신청서류
 -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등급별 기초가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입찰참가 신청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입찰서 1부

기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입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에 붙이는 대상 업종의 톤급별로 기초금액을 안내합니다.

폐업지원금에 한해서만 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정해진 날짜에 입찰장소에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 신청어업인은 누구나 입찰장에 입장하여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사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예비후보자로 관리되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공고 입찰에서도 사업 참여가 보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안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집행절차, 중도포기자에 대한 제재, 예산의 지원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인별로 알려드립니다.

7. 최종 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를 평가합니다.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과 잔존 가치액을 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면 예비후보자 중 우선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 계약체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9. 폐선처리

감척어선은 선박해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폐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선 내 기관, 장비 등은 매각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하여야 합니다.

어업인이 직접 장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만큼 지원금에서 공제합니다.

10. 지원금 지급

해당 어선이 최근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어업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입찰 안내문과 입찰공고문 그리고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등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201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Ⅲ. 201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 자원 남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업 감척
-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 감척

3. 사업대상 및 절차

- 연안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8개 연안어업 중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 연안선인망은 겸업 중인 업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① 업종간 분쟁해소 필요 업종의 어선 ② 서해유류유출사고 관련 폐업희망 어선 ③ 새만금 내측 폐업희망 어선 ④ 기타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관련 폐업희망 어선
- 폐업지원금에 국한하여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을 체결

결하고 이 지침이 정한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절차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한다.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및 지원계획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사업물량 | 사 업 비 | | | | |
|------|------|--------|--------|----|-------|----|
| | | 계 | 보조 | 응자 | 지방비 | 자담 |
| 연안어선 | 594척 | 24,344 | 19,475 | - | 4,869 | - |

※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2)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가)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나)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 3항(사업대상 및 절차)에 따라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집행지침에 따라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라) 2012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1) 사업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도 사업 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사업집행 주체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체계

1) 농림수산물부

- 가)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나)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 다)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 라) 사업결과 취합

2)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

- 가)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나) 사업대상 업종 선정
- 다) 입찰집행
- 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 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바)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 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가), 나)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지원대상 및 조건

- 1)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2)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한다.
- 3)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

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의 감척은 별도의 입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수한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하다.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 (3)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 (4)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관할 어촌계단위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확인 후 신청토록 할 수 있다.

(가)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
여 산출된 조업실적)

(다) 수협 위판 실적 : (1) 및 (2)의 자료를 확인 후 사업집행주체가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
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
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선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
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
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
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
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
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
는 아니 되며, 이 자격은 입찰 참가자격 제외대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
(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다)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허가정수보다 실제 어업허가가 적은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시·도별 허가정수보다 많은 어업허가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6.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가. 입찰안내

- 1) 사업집행주체는 입찰공고 이전에 “세부사업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등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대상 허가 어업자,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지역별로 어업인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

- 1)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의하되 사업집행주체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문서로 발송하여 가능한 많은 어업인들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입찰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가) 입찰에 붙이는 사항
 - 나) 입찰방법(직접 방문 입찰)
 - 다)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라) 입찰 일시 및 장소
 - 마) 계약체결 방법
 - 바) 입찰참가 자격
 - 사) 입찰참가 신청서류
 - 아)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등급별 기초가격(붙임 2)
 - 자)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붙임 3)
 - 차) 감척 소요 예산(폐업지원금, 잔존가액)
 - 카)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3) 입찰공고문은 표준입찰공고문(참고자료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 신청

- 1) 입찰참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 대상 업종별로 입찰대상 척수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등록하여야 입찰이 성립된다.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다만,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 마) 어선원부 1부

바)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각 1부(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서식 2)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자)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라. 입찰등록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등록서(서식 5)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2) 입찰등록은 등록 마감일 일과시간(18:00) 이내로 하며, 입찰 신청시 제출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 작성 비치

1)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의 $\pm 2\%$ 범위 내에서 단일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다만,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장에서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예정가격과 복수 예비가격은 밀봉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입찰집행

1) 입찰은 입찰서에 의하며 직접 방문 입찰로 한다.

2) 입찰 장소에 “입찰서 예시”(참고자료 4)를 부착하여 입찰 참가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찰결과 예정가격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과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고, 전체예산을 고려하여 입찰 대상척수의 1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한다.

4) 입찰결과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이다.

- 5)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 6) 재공고 입찰에서도 사업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협상에 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7) 입찰결과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이 끝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사. 입찰결과 안내

- 1)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집행절차, 예산의 지원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인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 순위자의 응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한다.

아. 기타

- 1)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붙임 1)에 의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가. 감정평가

-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당해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5(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와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붙임 4)에 의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8.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가) 사업자의 확정 및 지원금 집행 결정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계약체결 및 계약 불이행시 제재 조치

가. 계약체결

- 1) 사업집행주체는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표준계약서(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서식 4)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 2)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결정내용과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의 허가가 폐지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확정, 지원금 집행잔액,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치

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가.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1. 폐업어선 처리

가. 해체처리 등

-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선박해

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하거나, 계약 상대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 4)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 5) 해체처리대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6)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해체 대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

-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해체 대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 1)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60은 국고에 납부하고,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국고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가.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별 지원금이 확정되면 어선·어구를 인도받고 어

업허가증을 반납 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어선원부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해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체증명서가 제출되어 어선등록을 말소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상 필요시 사업시행주체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금액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계약상대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지원금의 집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배(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13.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보고서에 어업의 허가 정

수별 감척사업 추진실적(서식 6)을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군·구별 연안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1) 국가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02-500-2357~8)
- 2) 시도, 시·군·구 : 수산관련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절차는 (참고자료 1,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

인



(붙임 1)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시·군·구)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다만,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제외)
 -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 (1) 나, 다, 라의 경우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마. 어선원부 1부
 - 바.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1부(서식 2)
 - 사. 인감증명서 1부
 -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 자. 기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부받을 수 있다.
 - 가. 입찰공고문
 -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다.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1)

라.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서식 4)

마.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시·도지사(시장·군수)가 제시하는 경우]

바. 기타 참고자료

5.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 의서,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 (입찰) ①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은 입찰서(서식 3)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8. (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9. (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은 사업집행주체가 입찰공고한 대상 업종별로 대상 척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입찰의 연기) ①사업집행주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

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연안어업 업종별 입찰 대상척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결과 유효한 사업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사업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13. (사업대상자의 결정) ①사업대상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③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 포기자 또는 계약 미이행자가 발생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열이 가장 후 순위자의 응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 비율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어업허가 건수가 많은 어선, 어선의 규모가 큰 어선 순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14. (입찰결과 통지) ①입찰결과는 입찰 참가자 모두에게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인의 입

찰금액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평가방법 및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붙임 4)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산출한다.

④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⑤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가)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시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한다.

(나) 사업자 선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업자 선정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6.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①입찰결과와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7. (계약의 체결) ①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서식 4)와 구비서류를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집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9.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21.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업집행주체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공고시 해당업종의 기초가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 업종 | 1.0톤 이하 | 2.0톤 이하 | 3.0톤 이하 | 4.0톤 이하 | 5.0톤 이하 | 6.0톤 이하 | 7.0톤 이하 | 8.0톤 이하 | 9.0톤 이하 | 10.0톤 이하 |
|-----|------------|------------|------------|------------|------------|------------|------------|------------|------------|-------------|
| 복합 | 21,578 | 26,485 | 31,875 | 36,321 | 39,871 | 42,154 | 42,932 | 43,604 | 44,527 | 44,545 |
| 통발 | 21,578 | 26,485 | 31,875 | 36,321 | 39,871 | 42,062 | 43,553 | 44,546 | - | - |
| 자망 | 21,543 | 27,215 | 31,254 | 34,245 | 39,123 | 43,126 | 44,319 | 44,514 | 44,776 | 44,989 |
| 선망 | 12,404 | 18,132 | 24,215 | 30,101 | 36,324 | 40,541 | 40,632 | 41,603 | 41,828 | 41,826 |
| 들망 | 26,132 | 30,788 | 35,248 | 39,379 | 40,636 | 40,860 | 40,986 | 40,866 | 40,715 | 40,770 |
| 안강망 | 21,873 | 25,458 | 34,183 | 36,109 | 39,211 | 41,579 | 42,240 | 43,190 | - | - |
| 조망 | 13,224 | 16,163 | 20,470 | 21,566 | 24,128 | 27,337 | 28,845 | 30,680 | 31,750 | 33,390 |

※ 톤수는 소숫점이하 두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첫째자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액(가격)은 소수점(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반영함

(붙임 3)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초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입찰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 허가업종 | 강 | | | FRP | | | 목 | | |
|------|--------|--------|--------|--------|--------|--------|-------|--------|--------|
| | 1톤 | 3.5톤 | 7톤 | 1톤 | 3.5톤 | 7톤 | 1톤 | 3.5톤 | 7톤 |
| 자망 | 6,782 | 18,390 | 41,227 | 6,368 | 16,940 | 38,326 | 5,301 | 14,089 | 32,624 |
| 복합 | 8,040 | 19,651 | 43,556 | 7,626 | 18,201 | 40,655 | 6,811 | 15,350 | 34,953 |
| 통발 | 8,184 | 19,286 | 41,554 | 7,770 | 17,836 | 38,653 | 6,955 | 14,985 | 32,951 |
| 들망 | 6,634 | 18,184 | 75,887 | 6,220 | 16,734 | 72,986 | 5,405 | 13,883 | 67,284 |
| 안강망 | 18,213 | 30,436 | 54,099 | 17,799 | 28,986 | 51,198 | 6,984 | 26,135 | 45,496 |
| 조망 | 10,093 | 19,980 | 40,296 | 9,679 | 18,530 | 37,395 | 8,864 | 15,679 | 31,693 |

- 선망

| 선망(1척) : 5톤 | | | 선망(2척) | | | | | |
|----------------|--------|--------|----------------|--------|--------|-----------------|--------|--------|
| | | | 선망(본선) : 7.93톤 | | | 선망(부속선) : 7.93톤 | | |
| 강 | FRP | 목 | 강 | FRP | 목 | 강 | FRP | 목 |
| 47,290 | 45,218 | 41,145 | 87,551 | 84,264 | 77,805 | 55,951 | 52,664 | 46,205 |
| 선망(3척) | | | | | | | | |
| 선망(본선) : 7.93톤 | | | 선망(부속선) : 4.5톤 | | | 선망(운반선) : 7.93톤 | | |
| 강 | FRP | 목 | 강 | FRP | 목 | 강 | FRP | 목 |
| 77,211 | 73,924 | 67,465 | 26,757 | 24,892 | 21,226 | 42,065 | 38,778 | 32,319 |

(붙임 4)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1.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1) 선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통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 질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
| 강 선 | 25 | 20 |
| FRP | 20 | 10 |
| 목 | 15 | 10 |

2) 기관

- 기관은 해상용 기관과 육상용 기관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년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어선은 대부분 보조기관을 시설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엔진의 중고 구입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
| 기 관 | 20 | 10 |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평가법은 대상물건별로 제조달원가를 정한 후 정율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년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
| 의장품 | 15 | 10 |

4) 어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감가 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제조달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

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선별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한 업종별 동 규모어선의 평균 보유수량 2배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 어구를 가진 업종은 연승어업이며, 내구성 어구이나 유실에 의하여 소모되는 업종은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임. 이 경우 연승어업 어구 중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닛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은 유실율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서 식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즉 시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어선내역 | 선명 | | 업종 | |
| | 실통수 | | 건조일자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시/장소 | |
| | 입찰건명 | | | |
| 대사 리용 인인 ·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 |
| <p>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사도)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p> <p>붙임서류 : 1. 어업허가증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입찰서 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p> <p style="text-align: right;">2012.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귀하</p> | | | | |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 | | | | | |
|------|--|------|-----------------------|----|--|
| 허가번호 | | 허가기간 | ~ () | | |
| 어선명 | | 어선번호 | 어업의 명칭.종류 | | |
| 건조일자 | | 톤 수 |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 | |
| 선체재질 | | 기관종류 | 육상디젤(), 디젤() | 마력 | |

상기 본인은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어업허가 폐지에 동의할 것을 확인함

2012. . . .

위원인 주소

성명

(인)

(서식 3)

| | | | |
|---|------|--------|-----------|
| | | | |
| | | | 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 | | |
| | | | 2012. . . |
| 입찰자 | | (인감도장) | |
| <p>귀하</p> | | | |

(서식 4)

|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 | 계약번호 제 호 |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 약 자 | 발 주 처 | |
| | 계 약 상 대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
| 계 약 내 용 | 어 선 명 | 어업의 종류(톤수) |
|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폐업지원금 :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 |
| | 지 체 상 금 율 | 0.15% |
| | 어업허가증 반납일자 | 2012. . . 까지 |
| | 어선 반납일자/장소 | 2012. . . 까지/ |
| | 제재사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 <p>시·도의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어선감척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입서류 : 1. 어선감척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부. (생략) 3. 어선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2. . .</p> <p style="text-align: right;">해당 시·도 계약담당관 (인)</p> <p style="text-align: right;">계약상대자 (인)</p> | |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2012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 구 분 | 일 정 | 집행주체 |
|---------------------------------|----------------|------------------------|
| ○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달 - 사업대상 업종 지정 | 1월 | 시·도 |
| ○ 사업(입찰) 안내 - 사업 홍보 | 2. 08 ~ 2. 17 | 시·도 시·군·구 수협·어촌계 |
| ○ 입찰공고 | 2. 20 ~ 3. 01 | 시·도 시·군·구 |
| ○ 입찰등록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 3. 04 ~ 3. 08 | 시·도 시·군·구 |
| ○ 예정가격 작성 | 3. 11 | 시·도 시·군·구 |
| ○ 입찰 - 낙찰자, 사업대상자 선정 | 3. 12 | 시·도 시·군·구 |
| ○ 감정평가 실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 3. 13 ~ 5. 09 | 시·도 |
|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 5. 14 ~ 6. 30 | 시·도 시·군·구 |
|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12. 1 ~ 12. 30 | 시·도 |

※ 예시임

(참고자료 2)

감척사업 추진 절차

| 추진순서 | 수행 기관 | 소요 기간 | 내 용 |
|-----------------|------------|--------|--|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농림수산 식품부 | 즉시 |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 농림수산 식품부 | 즉시 | ○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
|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시·도 | 15일 이내 |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입찰 신청자격, 제출서류,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
| 사업안내 입찰공고 사업홍보 | 시·도 시·군 | 30일간 |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에 입찰 안내문 발송 ○ 기초가격, 예산,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입찰일시·소, 입찰방법,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
|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 시·군 시·도 | 7일간 | ○ 입찰 참가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참가 신청서류 접수 ○ 입찰 참가자격 유무 확인 후 유자격자에게는 입찰절차 안내 |
| 예정가격 작성 | 시·도 시·군 | 입찰 5일전 | ○ 시·도지사는 기초가격의 $\pm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
| 입찰 | 시·도 시·군 | 1일 | ○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장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 ○ 예비 사업대상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유찰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예비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참여부족이 예상될 경우 1차 참여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입찰결과 공개 - 입찰 후 예정가격은 즉시 공개 - 사업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향후 일정 및 포기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 |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 시·도 시·군 | 30일 |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시·도 시·군 | 10일 | ○ 예산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 |
|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 시·도 시·군 | 30일 | ○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
| 지원금지급 | 시·도 시·군 | 30일 | ○ 폐업지원금 입찰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
| 사업 정산 | 시·도 | 30일 | ○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

※ 예시임

(참고자료 3)

표준입찰공고문

○○시·군·구 공고 제2012- 호

연안어선 감척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연안어선 일반감척(○○업종 ○ ~ ○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방문입찰)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2. . . : / ○○시·군·구 ○○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12. . . : / ○○시·군·구 회의실
5.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 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7.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나)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라)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관할 어촌계단위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확인 후 신청토록 할 수 있다.

(1)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산출된 조업실적)

(3) 수협 위판 실적 :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사업집행주체가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5)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자

마) 최근 10년 이내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를 고려하여 허가건수가 적은 연안00어업(시·도에서 정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허가를 소지한 자.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

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7-가-(1)~(4)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다만,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 마. 어선원부 1부
-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1부(서식 별도 제공)
- 사. 인감증명서 1부
-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 자.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10.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 업종 | 0.1~1톤 까지 | 1.1~2톤 까지 | 2.1~3톤 까지 | 3.1~4톤 까지 | 4.1~5톤 까지 | 5.1~6톤 까지 | 6.1~6톤 까지 | 7.1~8톤 까지 | 8.1~9톤 까지 | 9.1~10톤 까지 |
|------|--------------|--------------|--------------|--------------|--------------|--------------|--------------|--------------|--------------|---------------|
| ○○업종 | | | | | | | | | | |
| ○○업종 | | | | | | | | | | |

가. 기초가격은 계약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개별 평가합니다.

11.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 추정가격

(단위 : 천원)

| 허가업종 | 강선 | | | FRP선 | | | 목선 | | |
|------|----|------|----|------|------|----|----|------|----|
| | 1톤 | 3.5톤 | 7톤 | 1톤 | 3.5톤 | 7톤 | 1톤 | 3.5톤 | 7톤 |
| ○○업종 | | | | | | | | | |
| ○○업종 | | | | | | | | | |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2.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예산(폐업지원금 + 잔존가치액) |
|----|-------------------|
| ○○ | ○○○백만원 |
| ○○ | ○○○백만원 |

13. 기타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감척사업 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 ○○과(전화번호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 .

○○ 시·군·구 입찰집행관

(참고자료 4)

입찰서(예시)

| 입찰서 | | | | |
|--|-------|---|--------|----------------|
| 입찰내용 | 공고번호 | 제2012 - ○○호 | 입찰일자 | 2012. . . |
| | 건명 | 2012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입찰 (연안어업 ○○업종, ○척, ○톤) | | |
| | 금액 | 금일천사백오십이만오천원정 (₩ 14,525,000) | | |
| 입찰자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123456-9101112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011-123-4567 |
| 선박재원 | 선명 | ○ ○ ○ | 어업의 종류 | 연안자망어업 |
| | 톤수(신) | 3.5 톤 | 건조일자 | 1999. 9. 9 |
|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를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2.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입찰자 아무개 (인감도장 날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도 ○○군수 귀하</p> | | | | |

※ 본 입찰서 예시를 입찰장에 미리 부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5)

1. 홍보물 내용

연안어선 감척사업 입찰 참가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잔존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업대상

감척대상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입찰 안내문과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방법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에 대하여 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을 합하여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 가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5. 사업참가자격

○ 신청자격

- 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 ②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
- ③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희망자가 적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9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다만,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수협 위판실적(필요시)으로 확인

④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⑤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⑥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제외대상

①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②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는 자(국제감척 및 소형기저 정리사업 포함)

③「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④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 이 되는 자

⑤최근 10년 이내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신청 서류를 제출한 어업자

⑥「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허가건수가 적은 연안00어업, 연안00어업 허가를 소지한 자.

⑦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상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음

6. 입찰방법

○ 입찰안내

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금년도 감척대상 업종, 예산,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도 보내드리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방법(직접 방문 입찰)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체결 방법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신청서류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등급별 기초가격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업종별 감척계획 예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입찰참가 신청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2톤 이하는 생략)

선적증서 사본 1부

어선원부 1부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기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입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에 붙이는 대상업종의 톤급별로 기초금액과 어선 표준가격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초금액과 표준가격은 개략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입찰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에 한해서만 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정해진 날짜에 입찰장소에 직접 방문 입찰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대상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사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예비후보자로 관리되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 자리에서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사업대상자가 없으면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재공고입찰 실시하여 사업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협상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안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의 집행절차, 예산의 지원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인별로 알려드립니다.

7. 최종 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를 평가합니다.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과 잔존 가치액을 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면 예비후보자 중 우선 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 계약체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어선은 폐선 처리되고 어업허가도 취소됩니다.

9. 폐선처리

감척어선은 선박해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폐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선 내 기관, 장비 등은 매각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하여야 합니다.

어업인이 직접 장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만큼 지원금에서 공제합니다.

10. 지원금 지급

해당 어선이 최근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어업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입찰 안내문과 입찰공고문 그리고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등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6)

201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사·도·별 | 사업량 (척 수) | 국고보조 | 융자 (금융) | 소계 | 지방비 | 자기부담 | 합계 |
|--|--------------|------------|------------|----|-----------|------|------------|
| 서울 | - | - | | | | | |
| 부산 | 42 | 1,378,000 | | | 344,500 | | 1,722,500 |
| 인천 | - | - | | | 0 | | 0 |
| 광주 | - | - | | | | | |
| 울산 | 6 | 197,000 | | | 49,250 | | 246,250 |
| 경기 | | | | | | | |
| 강원 | 14 | 460,000 | | | 115,000 | | 575,000 |
| 충북 | - | - | | | | | |
| 충남 | 82 | 2,689,000 | | | 672,250 | | 3,361,250 |
| 전북 | 53 | 1,738,000 | | | 434,500 | | 2,172,500 |
| 전남 | 130 | 4,264,000 | | | 1,066,000 | | 5,330,000 |
| 경북 | 74 | 2,427,000 | | | 606,750 | | 3,033,750 |
| 경남 | 165 | 5,404,000 | | | 1,351,000 | | 6,755,000 |
| 제주 | 28 | 918,000 | | | 229,500 | | 1,147,500 |
| 합계 | 594 | 19,475,000 | | | 4,868,750 | | 24,343,750 |
| 1. 재정지원율(%) : 연안어선 - 국고 80, 지방비 20 2. 단가 : 연안어선 32.8백만원/척(국비기준) | | | | | | | |

※ 사업물량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V. 자원관리형 및 폐업지원형 감척 단계별 도상연습(안)

IV. 자원관리형 및 폐업지원형 감척 단계별 도상연습(안)

1.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법 제4조)

- '12년에는 기존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보완 추진
- '13년부터는 수협중앙회 등 다른 기관에 위탁 추진 방안 검토

〈실태조사의 내용〉

- ◇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 ◇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자산 및 부채 현황, 어획량 등 조업상황, 어업 수입·어업비용 등)

도상연습

- ◇ 2010년도 실태조사 결과 검토
- ◇ 2012년도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식 등

2.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수립
 - 어선감척 시행계획 및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내용〉

- ◇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 ◇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 ◇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자원 규모와 연도별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상연습

-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10년도 실태조사(수협, 수산과학원) 결과 참조
- ◇ 시·도 및 관련기관·단체에 시달
 - * 시·도지사에게는 감척시행계획 수립 지시와 병행 시달

3. 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법 제6조)

-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어선감척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농식품장관은 근해어업, 시·도지사는 연안어업의 감척시행계획 수립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내용〉

-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 ◇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상연습

- ◇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안 마련
- ◇ 감척시행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지역별 설명회
- ◇ 연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확정

4. 감척대상 업종의 지정(법 제8조~제10조)

- 감척 대상 어업의 고지(수협, 단체, 어업자)
 -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등
- 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폐업지원형감척)
 - 어업자단체등에서 감척하려는 어선 척수, 소요예산, 감척효과 등을 제출
 -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검토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고, 어업자단체 등에 통지

-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감척대상 어업 직권지정
 -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 감척 대상 어업 지정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통지

도상연습

- ◇ 감척 대상어업의 고지
- ◇ 감척 대상어업의 자율(폐업지원형감척)신청
- ◇ 감척 대상어업의 직권지정(자원관리형감척)
 - (근해어업) 시·도지사와 협의
 - (근해어업) 수협 등 어업자단체 의견수렴
 - (근해어업)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개최
 - (근해어업) 감척 대상어업의 통지(어업자단체등)

5. 감척 대상어선(대상자)의 선정(법 제11조)

-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
-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
 - * 고려요인 :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 조업실적, 위법정도 등
 - 시·도지사(근해)나 시장·군수·구청장(연안·구획)과 협의하고, 어업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등 통지

도상연습

- ◇ 감척 대상자 신청 공고
- ◇ 감척 대상자 직권 선정(자원관리형감척)
 - (근해어업) 시·도지사와의 협의
 - (근해어업) 수협 등 어업자단체 의견수렴
 - (근해어업)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개최
 - (근해어업) 감척 대상자의 통지(어업자단체등)
- ◇ 감척 대상어선의 감정평가
- ◇ 감척 대상어선의 허가취소 및 폐선처리
- ◇ 감척지원금 지급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